



#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서울경제신문의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자 간의  
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 
업무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,  
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## 제1조 목적

본 계약은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 기념사업인 'CEO 초청 특강'을 실시하는데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소속 회원 대학의 시설물과 인적 지원을 제공하여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협력내용

본 계약에 의한 제휴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A. 개요

서울경제신문은 국내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고, 'CEO 초청 특강'을 국내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회원 대학의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.

### B. 협력범위

- B-1. 서울경제신문은 'CEO 초청 특강'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내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고,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.
- B-2.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'CEO 초청 특강'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속 회원 대학의 협조를 얻어 시설물 이용과 행사 진행,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다.

**C. 홍보**

C-1. 서울경제신문은 CEO 초청 특강 내용을 지면을 통해 보도하고, 계열 케이블 방송사인 서울경제TV SEN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, 방영할 수 있다.

C-2. 양 기관은 'CEO 초청 특강' 을 홍보함에 있어 공동 주관임을 항시 명시한다.

**제3조 분쟁해결**

본 계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,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.

**제4조 보안**

본 계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, 문서는 양 기관 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 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.

**제5조 효력발생, 개정 및 종료**

**A. 효력발생 및 종료**

본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타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폐기 결정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.

**B. 개정**

본 계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6조 계약의 해지**

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양 기관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**제7조 권리 및 의무 준수**

양 기관은 본 계약에 의거, 발생되는 권리 및 의무를 준수한다.

**제8조 기타사항**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.

본 계약은 2010년 2월 24일 2부를 작성·날인하였으며,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.

2010. 2. 24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 
회장 이배용



서울경제신문

사장 이종승

